

●**관세청고시 제2023-62호**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3-54호, 2023.09.0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3년 12월 05일

관세청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 고시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칙 <관세청고시 제2023-62호(2023.12.05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| 연번 | 고시번호(시행일) | 품명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547 | 2023-62호('23.12.5) | 마미콜 | |
| 548 | 2023-62호('23.12.5) | Backing Plate(with ITO Target) 등 4건 | |
| 549 | 2023-62호('23.12.5) |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 | |
| 550 | 2023-62호('23.12.5) | TOTE BAG | |
| 551 | 2023-62호('23.12.5) | SLT Basket | |

547. 마미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62 (2023.12.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마미콜 | 품목분류1과-5097 (2017.12.22) |

○ 물품설명

-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등록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폰에 주파신호를 보내주거나 위급시 알람음을 울려 위치를 알려주는 소형 전자기기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7.62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531.80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이고, 주기능은 알람음을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31.80-9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로 분류(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48. Backing Plate(with ITO Target)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62 (2023.12.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 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Backing Plate(with ITO Target) | 품목분류2과-5526 (2015.07.15) |
| 2 | Other articles of cobalt ; Cobalt Target ; Japan | 1139(중앙관세분석소) (2008.08.19) |
| 3 | Other articles of nickel ; Nickel Target ; Japan | 1138(중앙관세분석소) (2008.08.19) |
| 4 | ITO Target(Backing Plate) | 평가분류47281-125 (2001.02.05) |

○ 물품설명

-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서, 전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퍼터링 타겟과 타겟을 챔버내에 고정시키고 스퍼터링 작업시 도체 역할을 하는 특정 형상의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-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 6909.19-0000, 7419.99-9000 ②8105.90-0000, 7419.99-9000 ③ 7506.10-1000 7616.99-9090 ④ 6909.19-0000, 7419.99-0000 (재질별로 ‘타겟’ 과 ‘백킹플레이트’ 를 각각 분류)

- 변경후 HS 품목번호 : ① 제8486.90-3050호, ② 제8486.90-2040호③ 제8486.90-2040호, ④제8486.90-3060호

* 삭제조치 : 품목분류47281-1096(’ 03.11.13) “① PlatinumTarget; 3N5, ② GoldTarget; 3N5, ③ IridiumTarget; 3N5”

○ 변경사유

- ‘타겟’ 과 ‘백킹 플레이트’ 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, 소재인 타겟보다는 진공 챔버 내에서 스퍼터링 기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‘백킹 플레이트’ 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86.90-3050호 또는 제8486.90-3050호 등, 해당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(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49.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62 (2023.12.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; W'S ROUND MINI SHOULDER BAG; 05261H033A | 품목분류4과-2601 (2021.03.30.) |
| 2 |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; WSA101 | 품목분류1과-1736 (2018.06.01.) |

○ 물품설명

- 방직용 섬유제(직물)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손가방으로 휴대폰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제4202.22-2000호, ②제4202.22-109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①제4202.92-2000호 ②제4202.92-1090호

○ 변경사유

-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 4202.92-2000호 또는 제4202.92-1090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(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50. TOT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62 (2023.12.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; TOTE BAG; R.KOREA | 품목분류4과-5493 (2018.11.14.) |

○ 물품설명

- 방직용 섬유제(직물)로 만든 어깨에 메는 형태의 손가방으로 휴대폰이나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4202.92-2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4202.22-2000호

○ 변경사유

-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수납공간,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 4202.22-2000호의 핸드백으로 분류(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51. SLT B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62 (2023.12.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 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kitchen articles Of steel ; SLT Basket(D1-YSL-150DM) ; PR.CHNA | 품목분류2과-8984 (2015.11.19.) |

○ 물품설명

- 양념통이나 조리도구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방 하부장 내부에 설치하는 철강제 선반으로 하부장 도어를 열면 안쪽의 수납공간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음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7323.99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9403.99-0000호

○ 변경사유

- 제9403호에 분류되는 주방용 가구의 하부장을 구성하는 유닛으로 벽 중간에 짜 맞춰 사용하는 식기용 선반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제9403.99-0000호의 기타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 (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